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7-17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1구합2560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	2023. 3. 9.
판 결 선 고	2023. 5.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9. 16. (소장 청구취지 기재의 2020. 9. 15.은 착오 기재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7,476,600원, 농어촌특별세 1,496,3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7-17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은 2014. 9. 23. 로봇, 공장자동화시스템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설립 당시 대표이사인 원고가 총 발행주식의 45%인 900주를, 사내이사이던 C이 나머지 55%인 1,1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8. 6. 18. C으로부터 발행주식 200주를 인수하고, 2018. 10. 5.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된 신주 8,000주를 모두 취득하였으며, 2018. 12. 1. C과 D으로부터 900주를 추가 인수하여 B의 주식 합계 10,000주(100%)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B의 주식 변동 상황은 다음과 같다.

날짜	2014. 9. 22. (설립)		2018. 6. 18. (매매)		2018. 10. 5. (유상증자)		2018. 12. 1. (매매)	
구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B 전체	2,000주	100%	2,000주	100%	10,000주	100%	10,000주	100%
원고	900주	45%	1,100주	55%	9,100주	91%	10,000주	100%
C	1,100주	55%	400주	20%	400주	4%		
D			500주	25%	500주	5%		

다. 피고는 원고가 지방세기본법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0. 9. 16. B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상 가액에 주식 소유 비율을 적용한 634,494,19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17,476,600원, 농어촌특별세 1,496,30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7-17

원고는 B 설립 당시 C에게 주식 1,100주를 명의신탁하였고, 이후 원고가 C, D으로부터 주식을 인수한 것은 명의신탁된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회사 설립 당시부터 B 주식의 100%를 동일하게 보유하고 있었는바, 지방세기본법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과점주주의 주식비율이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 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8두4937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와 같은 제도의 취지와 과점주주의 판단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주식에 관하여 명의상 주주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주주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주식 취득자금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7-17

출처뿐만 아니라 명의상 주주와 제3자 사이의 관계, 그 주식이 주주명부 등에 명의상 주주 앞으로 등재된 경위 및 목적,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 의사결정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805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갑 제6 내지 8, 10, 11, 16, 17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B 설립 당시 보통주식 1,100주에 대한 주주권은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인 C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C 및 그로부터 주식을 인수한 D으로부터 주식을 각 매수하여 지방세기본법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C은 B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참가하여 보통주식 1,100주에 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었고, 법인등기부등본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었으며, 회사 설립 당시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발기인총회 의사록 등을 보면, C이 발기인 자격으로 실질적으로 주식을 인수하고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② B 설립에 필요한 주금 2,000만 원(= 2,000주 × 10,000원/주)이 2014. 10. 17.과 2014. 10. 20. 2차례에 걸쳐 원고의 은행계좌에서 B 명의 계좌로 이체되는 방식으로 납입된 사실은 인정되나, 발기인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2014. 9. 22.까지 인수주식에 대한 주금을 납입하기로 의결하였고, B은 2014. 9. 23. 설립되었으므로, 위 송금액을 주금납입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7-17

③ C이 작성한 서약서(갑 제16호증)에는 "2014. 9월경 B 설립 당시에 원고가 자본금 100%를 출자하되 본인을 차명으로 하여 55%, 원고 45%로 배분하기로 하였고, 원고에게 본인 명의의 차명주식을 빌려주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주식을 되돌려달라는 원고의 요구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아무 조건 없이 되돌려주기로 확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서약서는 작성시기가 B 설립일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8. 3. 6.에야 작성된 것으로 작성경위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B 설립 당시 원고가 C에게 차명주식으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식의 비율이 B 주식의 과반수를 넘는 55%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C 사이에 명의신탁약정 또는 그 해지에 관한 서류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례적이다(원고는 C에게 명의신탁에 관한 서류를 무리하게 부탁할 경우 C이 오해하여 명의신탁을 거절할 수도 있어서 서류 요청을 할 수 없었다고도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와 C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사정이다).

④ 이 사건과 동일하게 원고가 C에게 B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인지 쟁점이 되었던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7799 사건에서 위 법원은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 및 상고를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⑤ 원고는 울산지방법원에 C을 상대로 B 설립 당시 C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 1,100주는 원고가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주식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소송(2021가단123948호)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원고와 C 사이에 C 명의의 주식 1,100주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조정(2022머11705)이 성립되기는 하였으나, 그 조정경위 및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7-17

가 C에게 주식 1,1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7-17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④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자료를 확인한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과점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7-17

주주에게 과세할 과세물건이 다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과세물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과점주주의 주식등의 비율, 과세물건, 가격명세 및 그 밖에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끝.